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6. 4.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수영장등 사용료를 소비자 보호법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사용료 환불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등을 규정하고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등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지역 복지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기하고 대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 시설 사용료 조정(13 ~ 25% 인상)

<수영 월회원>

- 일반인 : 40,000원 → 50,000원(25.0%)
- 청소년,군인 : 34,000원 → 42,000원(23.5%)
- 노인,초등학생이하 : 28,000원 → 35,000원(25.0%)

<수영 일일이용>

- 일반인 : 2,500원 → 3,000원(20.0%)
- 청소년,군인 : 2,200원 → 2,500원(13.6%)

<수영 단체이용>

- 일반인 : 2,000원 → 2,500원(25.0%)
- 청소년, 군인 : 1,700원 → 2,000원(17.6%)

<헬스>

- 일반인 : 30,000원 → 35,000원(16.7%)

<에어로빅>

- 일반인 : 25,000원 → 30,000원(20.0%)

○ 용어 정의 : 별첨

○ 사용료 감면 및 할인

- 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50% 감액 신설(제9조3항)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86조 준수
- 1인 2종목이상 신청 시 20% 할인 신설(제9조4항)

○ 체육시설 이용자 사용료 반환조건 신설(제11조2항 제1~3호)

- 소비자보호법 및 재경부 고시 제2004-19호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준수

3. 참고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86조

○ 소비자보호법 및 재경부 고시 제2004-19호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 전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대비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구미시 공단동 256-18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체육, 교양, 경제, 문화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2.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회관의 운영) ①회관의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 이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 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제18조(위탁운영철회)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시까지로 한다.

③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회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근로자의 생활체육의장, 문화체육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구미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회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재산의 신규 취득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등의 임의변경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회관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등)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사용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회관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또는 술 취한 자
2. 전염성 질환자
3. 위험한 물건을 가진 자
4.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③제4조1항에 의거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에게 위임한다.

제12조(사용료) ①시장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관리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
2.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1~3급 동행인 1인), 국가유공자(배우자, 상이등급 1급 동행자 1인)에 대하여는 사용료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4. 1인 2종목이상 신청 시에는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이용이 불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반환 한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3.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계 및 운영) ①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 재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회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자는 회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회관 운영에 관한보고를 하게하거나 매3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1.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 체육시설

구 분	사 용 일 수		일 반 인	청소년, 군인	노인, 초등학생이하
수 영 장	월 회원		<u>50,000원</u>	<u>42,000원</u>	<u>35,000원</u>
	일일 회원	개 인	<u>3,000원</u>	<u>2,500원</u>	2,000원
		단 체	<u>2,500원</u>	<u>2,000원</u>	1,500원
헬 스 장	월 회원		<u>35,000원</u>	30,000원	20,000원
에어로빅장	월 회원		<u>30,000원</u>	25,000원	20,000원
탁 구 장	월 회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일일회원		2,000원	2,000원	1,000원

※ 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 용어의 정의

- 월 사용료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 임.
- 6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일 입장하여야 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입장으로 주 6(월~토)일 사용을 말함.
- “일반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 중에서 학생·군인·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함. (신설)
-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19세 미만을 말함.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자로서 하사이하를 말함.
- “단체”라 함은 단체구성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자 료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참 고 자 료

□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5.6.30>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의한 백분율)
4. -----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 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에 한한다.) 6. -----	100분의 50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1인

②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10과 같다.<신설2002.12.30,2004.3.17>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5.6.30>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8. -----	100분의 50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38.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상기준	비고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사용료 인상 대비표

구 분	사용일수		일 반 인	청소년, 군인	노인,초등 학생이하
수 영 장	현행월회원 회비		40,000원	34,000원	28,000원
	개 정 후		50,000원	42,000원	35,000원
	일일 회원	현행개인	2,500원	2,200원	2,000원
		개정개인	3,000원	2,500원	변동없음
		현행단체	2,000원	1,700원	1,500원
		개정단체	2,500원	2,000원	변동없음
헬 스 장	현행월회원 회비		30,000원	30,000원	20,000원
	개정월회원 회비		35,000원	변동없음	변동없음
에어로빅장	현행월회원 회비		25,000원	25,000원	20,000원
	개정월회원 회비		30,000원	변동없음	변동없음
탁 구 장	현행월회원 회비		25,000원	25,000원	20,000원
	개정월회원 회비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현행일회원 회비		2,000원	2,000원	1,000원
	개정일회원 회비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 전국 올림픽기념관 체육시설 이용 요금 현황

(단위 : 천원)

종목별 / 구분		구 미	종로구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강 원 춘천시	충 북 청주시	충 남 아산시	경 남 마산시	전 북 익산시	전 남 순천시
수 영 회 원 권	어린이	28 (주6일)	21.3 (주3일)	30 (주3일)	38 (주3일)	30 (주4일)	28 (주4일)	21 (주6일)	42 (주6일)	35 (주3일)	29 (주3일)	45 (주6일)
	청소년	34	26.7	44	43	30	40	31	47	40	38	50
	성 인	40	46	50	48	35	52	42	52	50	48	55
수 일 일 권	어린이	2.0	1.5	1.3	1.5	1.1	1.2	1.2	2.0	2.0	1.8	1.0
	청소년	2.2	1.65	2.1	2.3	1.4	1.8	1.7	2.5	2.5	2.4	1.5
	성 인	2.5	2.5	2.4	3.0	2.0	2.4	2.3	3.0	3.0	2.9	2.0
헬 스		30 (주6일)	38.5		40	40	35 (주4일)		20	35	25	
에 어 로 빅		25 (주2일)	34		33	28	35		35	20	20	40
탁 구	회원권	20 (주6일)			25	13	40 (주2일)				30	
	일일권 (2시간)	2.0										
차 밍		15 (주2일)			35	25	40					
스포츠댄스 (주2일)		20 (주2일)	25		30	28	40				25	